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14일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4명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설관리공단의 위·수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제3자 위탁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구민 생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는 같은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(공영주차

장 관리·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) 및 제2호(불법 주·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)의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함.

○ 검토 결과

-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르면 “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 우리 구(區)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▲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▲불법 주·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.
- 이러한 단서는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문개정조례(안)」가 영등포구의회 제101회 제2차 정례회(상임위원회 보류) 제102회 임시회(상임위원회 수정안발의)에 상정되고, 수정안 가결된 부분으로 당시 회의록을 참고하면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자 한 것으로 보여짐.
- 그러나, 현재 서울시 타 자치구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는 곳은 우리 구(區)가 유일함. 아울러 기술의 발달로 인력으로 운영되던 단순 업무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,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, 고려하고자 한다면 현행 조례에 따라 [영등포구 → 시설관리공단]에 위탁한 사항을 [영등포구 → 시설관리공단 → 재위탁업체]의 제3자 재위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 .

발의자: 이규선, 양송이, 신흥식,
임헌호, 남완현 의원
(5인)

1. 제안이유

시설관리공단의 위·수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2항 단서 중 “**아니하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 (제1호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.)**”를 “**아니한다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(생 략)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<u>아니</u> 하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 (제1호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.)	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니</u> <u>한다.</u>